

출입국관리법

[시행 2009. 6.20] [법률 제9140 호, 2008.12.19, 일부개정]

제 10 장 벌칙

제 93 조의 2 (벌칙)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.

1.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자로서 도주할 목적으로 보호시설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자
2. 이 법에 의한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중에 있는 자로서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자
3. 이 법에 의하여 보호·일시보호된 자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중에 있는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

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 12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
2. 제 12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다른 국가에 불법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
3. 제 12 조의 2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

[전문개정 2005.3.24]

제 93 조의 3 (벌칙)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05.3.24>

1. 제 12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
2. 제 93 조의 2 제 2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(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를 제외한다)

[본조신설 2002.12.5]

제 94 조 (벌칙)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1993.12.10, 1996.12.12, 1997.12.13, 2001.12.29, 2002.12.5, 2005.3.24>

1. 제 3 조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
2. 제 7 조제 1 항 또는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국한 자
- 2 의 2. 제 12 조의 2 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 93 조의 2 제 2 항 또는 제 93 조의 3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
- 2 의 3. 제 7 조의 2 의 규정에 위반한 자
3. 제 1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
4. 제 1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
5. 제 17 조제 1 항, 제 18 조제 1 항·제 5 항, 제 20 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
- 5 의 2. 제 18 조제 3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
6. 제 18 조제 4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·권유한 자
- 6 의 2. 제 21 조제 2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
7.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자
8. 제 23 조·제 24 조 또는 제 25 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

- 9. 제 28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한 자
- 9 의 2. 제 33 조의 2 의 규정을 위반한 자
- 10. 제 69 조 또는 제 70 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

제 95 조 (벌칙)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 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1993.12.10, 2005.3.24>

- 1. 제 6 조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
- 2. 제 1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
- 3. 제 15 조제 1 항 · 제 16 조제 1 항 또는 제 16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
- 4. 제 15 조제 2 항 · 제 16 조제 2 항 또는 제 16 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
- 5. 제 18 조제 2 항 또는 제 21 조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
- 6. 삭제 <1996.12.12>
- 6 의 2. 제 21 조제 2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
- 7. 제 31 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
- 8. 제 51 조제 1 항 · 제 3 항, 제 56 조 또는 제 6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자로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 도주한 자(제 93 조의 2 제 1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)
- 9. 제 6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
- 10.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 76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

제 96 조 (벌칙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제 71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제한을 위반한 자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 73 조제 1 항 · 제 2 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위반한 자
- 3. 정당한 사유 없이 제 75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

[본조신설 2005.3.24]

제 97 조 (벌칙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제 18 조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 · 권유한 자(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)
- 2. 제 21 조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자(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)
- 3. 제 72 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
- 4. 제 74 조, 제 75 조제 4 항 · 제 5 항 또는 제 76 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
- 5. 제 76 조의 6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동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

[전문개정 2005.3.24]

제 98 조 (벌칙)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00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1993.12.10>

- 1. 삭제 <2005.3.24>
- 1 의 2. 삭제 <2005.3.24>
- 2. 제 27 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
- 3. 제 36 조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

4. 삭제 <1993.12.10>

5. 삭제 <1993.12.10>

제99 조 (미수범등) ①제93 조의2, 제93 조의3, 제94 조제1 호·제2 호·제2 호의2·제9 호 및 제95 조제1 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. <개정 1997.12.13, 2002.12.5>

②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.

[전문개정 1996.12.12]

제99 조의2 (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) 제93 조의3 제1 호, 제94 조제2 호·제3 호·제4 호·제8 호 또는 제95 조제3 호·제4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없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난민협약 제1 조A(2)에 규정된 이유로 그 생명·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입국 또는 상륙한 난민이며 그 공포로 인하여 당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 그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. <개정 2002.12.5>

[본조신설 1993.12.10]

제99 조의3 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.

1. 제94 조제2 호의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
2. 제94 조제5 호의2·제10 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또는 동조제9 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중 제33 조의2 제1 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
3. 제95 조제6 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
4. 제96 조제1 호 내지 제3 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
5. 제97 조제4 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

[본조신설 2005.3.24]

제100 조 (과태료)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<개정 2005.3.24>

1. 제19 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
2. 제19 조의4 제1 항 또는 제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
3. 과실로 인하여 제75 조제1 항 또는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

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00 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<신설 1993.12.10>

1. 제35 조 또는 제37 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
 2. 제79 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
 3. 제81 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
- ③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0 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1. 제33 조제2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
2.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청 또는 신고에 있어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보고한 자

④제1 항 내지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부과·징수한다. <개정 1993.12.10, 1996.12.12>

⑤제4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<개정 1993.12.10, 1996.12.12>

⑥제4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

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. <개정 1993.12.10, 1996.12.12>

⑦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. <개정 1993.12.10>